

## 토목공사업

### ■ 업무내용

종합적인 계획 ·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, 개량하는 공사

Ex) 도로 · 항만 · 교량 · 철도 · 지하철 · 관개수로 · 발전(전기제외) · 댐 · 하천 등의 건설,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, 간척 · 매립공사 등

### ■ 등록기준

#### 1. 기본금

| 법인     | 개인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5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
#### 2. 기술능력

##### 기술자격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

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# 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좌당        | 자본금 | C등급 이상                 | D등급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토목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55,600원 | 5억원 | 117좌<br>(182,005,200원) | 131좌<br>(203,783,600원) |
|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4. 시설 · 장비

##### 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